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해력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시책 수립·실시〉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3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실시	2
2.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인공지능교육 시책 수립 시 문해력 영향 고려	10
3. 개정안 부칙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7. 24.

3. 회 부 일 : 2026. 7.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해력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시책 수립·실시(안 제22조의7제1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7(문해력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3장(교육의 진흥)에서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

체육,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인공지능교육, 교육의 정보화 등 분야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해력 또는 문해력교육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교육기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¹⁾.

반면 「평생교육법」은 개정안의 ‘문해력교육’과 유사한 개념인 ‘문해교육’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음(「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²⁾.

1)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해력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법률에서 적용대상·규율영역·소관 부처를 각각 달리하여 규율되고 있음.

「평생교육법」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을 규정하고, 교육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문해교육센터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두고 있음(「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기초학력 보장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기초학력 보장 시책·종합계획·진단검사·학습지원교육을 규정하고 있음(「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국어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국어능력 검정을 규정하고 있음(「국어기본법」 제3조제4호, 제4조, 제6조제3항제3호, 제22조, 제23조).

「독서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시행 의무 및 교육부장관의 학교 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10조).

2)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해력 관련 현행 법률 규정]

법률	적용대상	소관 부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성인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문해교육 지원체계
「기초학력 보장법」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학생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진단검사 및 학습지원
「국어기본법」	전 국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능력 검정
「독서문화진흥법」	전 국민·학생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 진흥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 「독서문화진흥법」의 법률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나, 제10조에 따른 학교 독서문화 진흥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법률들은 각각 성인 비문해자, 학령기 학생, 국어 사용 능력, 독서 활동이라는 특정 대상·수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판단하는 역량으로서의 문해력 전반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일반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문해력 수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학령기 학생의 경우 문해력 저하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성인의 경우 기초 문해능력 수준이 낮은 성인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됨.

2021~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1수준(성취수준 매우 낮음) 비율은 중3의 경우 2021년 6.0%에서 2025년 10.8%로, 고2의 경우 2021년 7.1%에서 2025년 10.4%로 각각 증가하였음.

< 교과별 '1수준' 비율(%) >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1	6.0 (0.33)	11.6 (0.49)	5.9 (0.33)	7.1 (0.52)	14.2 (0.83)	9.8 (0.62)
'22	11.3 (0.88)	13.2 (0.57)	8.8 (0.54)	8.0 (0.53)	15.0 (0.83)	9.3 (0.62)
'23	9.1 (0.52)	13.0 (0.50)	6.0 (0.34)	8.6 (0.65)	16.6 (0.93)	8.7 (0.71)
'24	10.1 (0.43)	12.7 (0.51)	7.2 (0.37)	9.3 (0.63)	12.6 (0.64)	6.5 (0.44)
'25	10.8 (0.42)	14.9 (0.48)	6.5 (0.29)	10.4 (0.66)	11.6 (0.60)	6.8 (0.51)

※ 2021~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작성

202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1.8%가 학생의 문해력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저하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매체 과사용(36.5%), 독서 부족(29.2%) 순으로 조사되었음³⁾.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3년 제4차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가 어려워

3) 자료 :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조사 결과

Q3> 학생 문해력 저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내용	빈도	비율(%)
① 독서 부족	3,417	29.2%
② 어휘력 부족	2,000	17.1%
③ 기본 개념 등 지식 습득 교육 부족	1,532	13.1%
④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매체 과사용	4,274	36.5%
⑤ 교육과정에 문해력 교육 부족	372	3.2%
⑥ 기타	101	0.9%
계	11,696	100%
※ 2개 선택 항목은 2배수로 산출됨.(11,696 / 2 = 5,848)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문해능력 수준 1’에 해당하는 성인은 전체 성인의 3.3%인 약 146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능력이 부족한 수준 1~3에 해당하는 성인은 전체의 16.6%인 약 736만 명으로 나타났다⁴⁾.

□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역량인 문해력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의 근거를 일반법 차원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입법형식 측면에서 안 제22조의7제1항은 「교육기본법」의 기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제3장(교육의 진흥)에서 교육 영역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책무규정을 병렬적으로 두고 있고, 최근에도 진로교육(법 제22조의3, 2023.9.14. 신설),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법 제22조의5, 2024.12.20. 신설), 인공지능교육(법 제22조의6, 2026.5.6. 신설), 보호자 교육(법 제17조의4, 2026.5.6. 신설) 등이 같은 형식으로 추가되어 왔음.

4)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년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 2024. 8., pp.5~6.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해능력 수준 1은 3.3%(약 146만 명), 수준 2는 5.2%(약 231만 명), 수준 3은 8.1%(약 358만 명), 수준 4 이상은 83.4%로 나타남. 수준 1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가 어려워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함.

따라서 문해력교육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이 규율하려는 ‘문해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해의 대상에 ‘글’과 함께 ‘정보’를 포함하고, 이해능력 외에 ‘판단’능력까지 규정하고 있음. 이는 「평생교육법」이 문해교육을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보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판별하는 역량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 경우 교육의 정보화(법 제23조), 인공지능교육(법 제22조의6) 등 현행법의 다른 조문과 규율영역이 일부 중첩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시책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시책은 「기초학력 보장법」과 규범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계획체계와의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음.

「기초학력 보장법」⁵⁾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5)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

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서로 다름. 또한 같은 법 제4조⁶⁾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령기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영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우선 적용됨.

다만 학령기 학생에 대한 문해력 관련 시책은 이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⁷⁾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시책을 기존 계획체계와 어떻게 연계 또는 구분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6) 「기초학력 보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7)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인공지능교육 시책 수립 시 문 해력 영향 고려(안 제22조의7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법 제22조의5)⁸⁾과 인공지능교육(법 제22조의6)⁹⁾ 시책을 수립할 때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7(문해력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5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제22조의6에 따른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9) 「교육기본법」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디지털기기의 이용과 문해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가 확인되는바, 개정안 제2항의 입법취지는 실증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202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생의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디지털매체 과사용이 36.5%로 가장 높게 지목되었고¹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에서도 문해력 수준이 높은 학생은 휴대폰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는 반면 문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음¹¹⁾.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¹²⁾에서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약 8시간(479.6분)으로 나타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수립할 때 그것이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 제2항은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 관련 시책 추진시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1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조사」, 2024. 다음 순위는 독서 부족(29.2%), 어휘력 부족(17.1%) 순임.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생 문해력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방안 탐색: 4~6학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I 2024-2, 161면·203면.

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2.12.1.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2,500명임.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그 부작용에는 문해력저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현행법 제3장(제17조의2부터 제29조까지)은 각 교육 영역별 시책 수립 의무를 병렬적·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조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다른 조문에 따른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출]

<교육부>

○ 안 제22조의7제1항(문해력 향상 시책 수립·실시): 일부 수용

- 학생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독서교육을 통해 문해력 향상과 창의성·비판적 사고 함양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22조의7제2항(스마트기기·AI 교육 시책 수립 시 영향 고려): 신중 검토

-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성과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세부적인 방안 등은 필요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특정 원칙에 대하여 일부 원칙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입법상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조문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시·도교육청>

○ 안 제22조의7제1항(문해력 향상 시책 수립·실시): 신중 검토

- (대구) 문해력교육은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핵심내용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5개년)에 따라 진단·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함

- **안 제22조의7제2항(스마트기기 · AI 교육 시책 수립 시 영향 고려): 신중 검토**
 - (대구) 문해력 향상의 중요성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판적 정보 이해 역량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함
 - 다만,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인공지능교육은 디지털 활용 역량과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는 교육정책으로, 미치는 영향을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각 정책의 자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 규정은 「교육기본법」의 최근 입법례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교육기본법」의 최근 입법례(부칙 시행일)]

신 설 조 문	공포일	부 칙
제22조의3(진로교육)	2023. 9. 14.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2024. 12. 20.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2026. 5. 6.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도 없어 별도의 시행준비기간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